

## 산업안전 Q&A

Q

현장내에서 사용중인 안전순찰차량으로 회사소유차량이 아닌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보험료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단, 이 차량은 현장안전순찰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구입하였고 보험의 종류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03.4.1 ~ 2004.4.1

-공사기간 : 2002.3.1 ~ 2004.3.31

-보험의 종류 : 업무용 자동차

-피보험자 : 개인(김모씨)

-연간보험료 : 902,760원

A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용 안전순찰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관리자의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소유자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3 차량보험료의 경우 주행거리 등에 관계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된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비용외에 개인소유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개인 보험료와 업무용 보험료의 차이 등) 동 추가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따라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면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 초과 공정만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2003.7.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가. 발암성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따라서,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 측정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써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미상주할 경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는 것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상주의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3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채용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와 이때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채용전 건강진단(또는 채용신체검사)등”은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입사구비서류 또는 조건의 하나로 임의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갈음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업이 임의로 정하여 실시하는 “채용전 건강진단(또는 채용신체검사)등”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그러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7조 및 별표2의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채용전 건강진단(또는 채용신체검사)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